



## 손해사정제도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

### 1. 손해사정사의 역할과 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.

- ☞ 보험업법에서는 '보험사고에 따른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'을 손해사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, 손해사정사의 업무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.

#### < 보험업법 >

제188조(손해사정사 등의 업무)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
2.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
3.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
4.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·제출의 대행
5.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

### 2. 손해사정사 업무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.

- ☞ 손해사정사는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결정에 필요한 손해 발생사실의 확인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,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 및 심사는 「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보험회사의 본질적 업무에 해당하여,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업체에서는 수행할 수 없는 업무입니다.

- ☞ 또한, 손해사정사가 미지급보험금에 대한 지급보증, 보험금 지급금액을 보험회사와 협의·합의하는 사항은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항으로 계약자께서 손해사정사 선임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### 3.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이 강화되어 시행 중입니다.

- ☞ 보험회사에서는 손해사정이 필요한 보험금 청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비자께 손해사정사 선임에 관하여 문자, 서면 등을 통해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.

- ☞ 또한, 보험회사는 '20.1.1일부터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 확대\*'를 위해 손해사정이 필요한 실손의료보험 단독 청구시 계약자가 직접 선임하신 손해사정사 선임 비용을 보험회사가 지불하고 있습니다.

\* 생명보험협회 보도자료「보험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 제도 시행안내(19.12.06)」